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3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장 박병찬, 류금렬 서기관(2110-5343)	

수출허가 면제 확대 등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

-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-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 : 최중경)는 **전략물자*** 관련 **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**하기 위하여 **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, CP기업**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** 등 **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**를 일부 **개정**하여 **'11년 3월 16일**(수)부터 **시행**함

* **전략물자** :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가능한 물품·기술·SW이며,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수출 要

** **CP기업** : 자율준수체제(Compliance Program)를 갖추어 지정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

□ 이번 개정으로 총 **14건의 본문개정**과 **1건**의 **별표 개정, 17건의 별지 서식**을 **제·개정**하였는 바,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

○ **첫째**, 수출허가 면제대상*을 기존 9종에서 다음 **2종을 추가**하고 **1종을 개선**함

* 면제대상은 '10년중 1,083건으로 지경부 소관 전략물자 수출허가·면제 3,060건의 35%를 차지

- 수출허가 **면제대상 금액 상향**개선 (미화 1천불이하 → 3천불이하)

- **CP기업**이 '가'지역* 등에 소재한 **현지법인등에 수출시 허가면제**

* "가"지역 :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미국·영국·독일·프랑스·일본 등 29개국

- 암호화품목(ENC)에 대해 '가' 지역 또는 WA가입국으로 수출시 허가 면제

○ **둘째, CP기업**에 대한 **수출허가 기한 단축**(15일→ 10일)하며, 지정후 지정변경이 가능토록 근거 신설

* 허가면제 추가 : CP기업이 '가'지역등에 소재한 현지법인등에 수출시

○ **셋째,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**을 위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'스테인리스 강판'을 제외시키고,

- 원전수출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정받은 '전략물자 판정결과'를 한전 등 수출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하며,

- 원자력전용품목의 경우 '최종사용자 서약서' 징구를 면제 ('정부보증서'를 별도 징구하고 있음)

□ **기대되는 효과**는 **수출면제 대상**에 **157건* 이상 추가**되어, **수출면제 비중**(건수 기준)이 종전 35%에서 향후 **40% 이상으로 확대**될 전망이며,

* '10년 실적 감안시, 면제금액 상향 부문 45건, CP기업의 본·지사간 수출 부문 85건, 암호화품목 부문 27건 이상 면제 예상

○ **CP기업이**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시 **허가* 처리 평균 소요일**은 종전 5.8일에서 **향후 3.9일로 개선**될 전망*

* '10년 CP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은 210건

참고 **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요**

1.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

○ 「**전략물자**」란 대량파괴무기(Weapons of Mass Destruction; WMD)와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가능한 품목·기술·소프트웨어

○ 「**전략물자 수출통제**」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**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,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**은 전략물자의 **수출허가**를 통하여 **WMD 확산 통제**

<국제수출통제체제>

핵무기	생·화학무기	미사일	재래식무기
NSG[1]	AG[2]	MTCR[3]	WA[4]
46개 회원국	41개 회원국	34개 회원국	40개 회원국

* **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원칙과 통제품목을 정하고, 회원국은 자국의 법에 반영하여 통제(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)**

2. 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

○ 9. 11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**국제안보의 핵심현안**으로 대두

○ **UN 안보리결의**(1540호, '04.4月)를 통해 전략물자 **수출통제제도**는 **국제 규범화**되었고,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

○ 수출통제 위반기업은 **거래부적격자(DL)**[5]에 등재되어 **무역제한, 대외이미지 실추** 등 기업의 **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**

1) 핵공급국그룹 : Nuclear Suppliers Group(NSG),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2) 호주그룹 : Australia Group(AG),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3) 미사일기술통제체제 :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(MTCR), 미사일 관련 통제
4) 바세나르체제 : Wassenaar Arrangement(WA),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5) 거래부적격자 명단 : Denial List(DL)

3.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

□ 개 요

○ '87년 **대외무역법**시행령에 도입, **'03년 상황허가** 제도 시행
* 국제체제 가입 : NSG('95), AG('96), WA('96), MTCR('01)

○ '05. 2월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통** : 판정. 허가 온라인 서비스

○ '07. 6월 전략물자 지원 전문기관인 **『전략물자관리원』 설립**
* 전략물자 판정, 시스템 운영,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등 지원

□ 우리나라 제도 주요내용

○ **(전략물자)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것 등**을 지경부에서 고시

○ **(전략물자 판정)**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(자가판정)하거나, **전략물자관리원**에 의뢰하여 **판정**(사전판정)

○ **(수출허가)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받아 수출

○ **(상황허가)**전략물자 아닌 물자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

○ **(자율관리) 자율준수무역거래자(CP)를 지정**하여 허가 면제 등 혜택

○ **(벌 칙)** 수출허가 등 위반 시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**3년 이내 무역제한**

□ 수출통제 운영 현황

○ 우리나라는 최근 시스템 구축, 제도개선 등 **모범이행 국가로 인식**되도록 하는데 **최선의 노력 경주**

* 미국은 우리 전략물자관리시스템(YesTrade)을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관계국에 홍보

○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이행 지원으로 **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도 개선**